

영등포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9.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영등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각부 및 장관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나, 단순한 명칭변경사항이므로,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내용

-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상 공 부 → 지식경제부
-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장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예 산 청 장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재 무 부 장 관 → 기획재정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련 개정 조례 : 12건(14개 조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 조례 제4조제2호, 제4조제6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 별표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 제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0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개정
 - 제39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 조례의 개정
 - 제3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 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 제5조제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헬케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 제5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 별표3 제7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 제2조제1호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행정각부 및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12개의 조례임.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9. 23.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정부조직법

제22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부
15. 국토해양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